#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

2022. 11. 21.

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

I. 추진 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II. 현장의 주요 건의사항3
III. 추진전략 및 과제4
IV. 세부 추진방안5
1. [과제1]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5
2. [과제2]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9
3. [과제3]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13
♡. 향후 계획18
※ [참고] 규제혁신 과제 관련 해외사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

# 1. 추진 배경

- □ 보험산업은 225조원\* 규모('21년 수입보험료 기준)의 시장으로,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
  - \* ('18년) 202조원 ('19년) 213조원 ('20년) 221조원 ('21년) 225조원 (연평균 +3.6%)
  - 국민 대부분이 실손·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미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



[실손보헌

**그.** 3,900만명 **९**०० [자동차보험]

✓ 가입 약 2,300만대 ✓ 年 보험료 20조원 [전체 보험]

✓ 전체보험료 年 약 225조원 (1인당 연간 약 450만원)

- □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, 보험산업은 **낡고 촘촘한 규제**\* 하에서 **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**하지 못하는 **한계 직면** 
  - \*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·실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다른 업권 대비 규제가 촘촘하고 복잡
  - 1 네트워크·플랫폼 기반의 디지털·비대면 경제 확산에도 보험 시장의 디지털 정확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\*
    - \*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('20년) : 생보 0.3%, 손보 6.3% 자동차·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확대되는 경향
  - ② 고령화, 디지털 네이티브 등장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, 혁신적인 상품·서비스를 통한 "질적 경쟁" 미흡
    - 유사한 상품의 판매채널을 통한 "마케팅 경쟁"에 치중한 행태가 지속되어 산업전반의 역동성 상실\*
      - \* 점유율. (생보 대형3社) '15년 46.9%→'21년 47.4%, (손보 대형4社) '15년 65.2%→'21년 62.3%
- □ "양적 성장"을 "질적 성장"으로 전환하여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할 필요

- □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<sup>\*</sup> 논의(2월~),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(6~7월)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
  - \* 금융위, 금감원, 전문가, 업계,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
  - 특히, 8개 금융권협회\*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
     보험 비중이 높아(77건) 개혁 필요성을 실감
    - \* 은행, 생·손보, 여신금융, 저축은행, 금투, 핀테크,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

<	보험	관련	건의과제	분류(77개)	(참고2)	>
---	----	----	------	---------	-------	---

과제 구분		① 디지털 전환	② 혁신 인프라	③ 감독 행정	④ 기타	합계
	진입규제 완화	4				4
	업무범위 개선	15				15
그제	지배구조 개선			1		1
규제 완화	재무건전성 규제개선				14	14
신외	영업행위 규제완화	20				20
	검사·제재 개선			2		2
	기타 규제완화	1			1	2
제도	시장질서 확립			14		14
지원	디지털 혁신 인프라		4		1	5
합 계		40	4	17	16	77

- ⇒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을 중점으로 과제 발굴
  - 특히,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내 금융 회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
  - ※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중 **3개 과제 포함** (⑦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규제 개선, ②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, ③ 감독·검사·제재 행정 개선)
  - ※ 보험 관련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큰 16건 우선 수용 (☞ 기타 과제도 추가 검토 예정)

# Ⅱ. 현장의 주요 건의사항

- □ 디지털 보험시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원 필요
- 기술 발달, MZ세대의 주력 소비층으로의 부상이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, 이에 대응한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\*
  - \* 아직까지 보험시장 내 MZ세대 고객비중은 저조한 수준 (20대 가입률(%): 생보 58.5, 손보 66.5 < 전체 가입률(%): 생보 72.7, 손보 76.2)
- 핀테크 제휴 등을 통해 MZ세대의 니즈에 맞는 혁신적 상품을 개발·공급할 수 있는 작고 유연한 조직형태 출현 지원 필요
- 보험모집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판매형태 (화상통화 등)가 가능토록 모집규제의 디지털적합성 제고\* 필요
  - \* 현재는 전속설계사·대리점의 대면 영업방식에 기반한 아날로그형 규제체계
- 2 선진적 상품개발·자산운용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필요
- 해외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,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 기능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 지속\*
  - \* 국제보험그룹(IAIG)의 글로벌 보험사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보험회사 全無
- ③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, 민간 인프라 기능 확충 필요
- 감독당국의 일부 제재·감독 행정\*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
  - \* 예: 기초서류 위반시 소비자 피해와 관련 없는 단순오류에도 일률적 과징금 부과
-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·역량 등으로 민원 서비스 등이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기 어려워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분담 필요

# Ⅲ. 추진전략 및 과제

#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·성장 유도

# 더 나은 규제시스템(Better Regulation)을 위한 3대 과제

과제1

## 산업구조 개편 지원

과제2

# 보험회사 경영자율성 제고

- 🚺 허가정책 정비 : 1사1라이선스 유연화
  - \*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·혁신을 선도할 특화보험사의 시장진입 촉진
- 🧿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활성화
  - \* 화상통화, 하이브리드 모집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개선

-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
  - \*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발생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·서비스 제공 허용
  - \* '연금상품' 다운 연금보험이 개발되도록 규제 완화
-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
  - \*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완화, 채권발행 한도 규제 유연화
  - \*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개선

과제3

## 감독행정 및 민간 인프라 확대

-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 합리화
  - \* 기초서류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,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등
- 2 민간 주도의 인프라 기능 제고
  - \* 보험협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등이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도록 개선

# Ⅰ∨. 세부 추진방안

## 과제 1

#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

- ◇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·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,
- ◇ 디지털·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 전환

#### 1. 허가정책 정비: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

☞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⑫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

- □ (현황) 그간 보험업 허가정책상 동일그룹 내 생·손보 각 1개 회사만 진입해온 경향 ("1사 1라이선스")
  - 예외적으로 그**룹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**(온라인 vs 오프라인)한 **온라인 전문보험사**만 **추가진입**\*한 사례
    - \* 온라인 전문보험사 진입시, 기존의 종합보험사는 온라인 채널 활용 중단
- → (문제점)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인허가 정책기조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신규 보험사의 출현을 저해
- ① 생·손보사를 旣보유한 금융그룹의 경우, 디지털 수요와 소액· 단순보장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화전문사 설립 불가
  - \* (사례) 모든 상품을 하나의 보험사에서 판매시,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
    →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실생활 밀착형 소액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
    소비자에게 **대면가입이 필요**한 **특약이 많고 복잡한 상품**을 추천
- ② 온·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보험경험이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에 판매채널의 분리는 고객 불편을 초래
  - \* (사례) 온라인 채널이 없는 보험사의 고객은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상품가입 불가

- □ (개선)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수 있도록 허가정책 정비
  - **상품별 특화**된 보험회사의 진입 허용(전향적 허가)
  - 소액단기전문보험사\* 또는 단종보험사(예: 동물보험 특화보험사)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·특화할 경우, 진입 허용
    - \* 보험기간 1년, 보험금 상한 5,000만원의 소액단기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사

#### ※ "상품별 특화"를 위한 상품분리(예시)

- ① (**단종보험사**) 기존 종합보험사와 「**상품종목」분리** (예: 동물보험 특화 보험사를 子회사로 설립시, 기존 母회사의 동물보험 판매중단)
- ② (소액단기전문보험사) 「상품종목」은 분리하지 않으나, 기존 종합보험사는 소액단기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소액단기상품 판매 제한\*
  - \* 가입조건(연령, 보상비율, 면책기간), 담보 등 상품 차별화 필요
- 다만, 허가심사시 <sup>①</sup>보험회사 재무건전성, <sup>②</sup>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\*
  - \* 예: 적자인 보험부문만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시, 분리 후 별도 법인의 파산 등 소비자 피해 우려 → 별도 법인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진입 허용
- ②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<u>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</u>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
  - 기존 교차모집 회사\* 外 **자회사 상품**에 대한 **교차모집 허용** 
    - \* 현재 보험설계사는 ①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②업종이 다른 1개사(생보소속인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,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사)의 상품만 모집 가능

#### ※ (해외사례) 日, 종합보험사의 소액단기보험사등 자회사 보유 허용

- (니혼생명그룹) 과거 전통 판매채널 유지를 위해 온라인 보험업 진출에 소극적
  - → 최근 MZ세대의 디지털 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

- ❸ 온라인 영업이 제한\*되었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CM 채널(모바일, 홈페이지)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  - \*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
  - 다만, 향후 신규 보험사 허가시에는 「판매채널을 분리(오프라인 vs. 온라인)하여 진입」하는 형태는 허가를 지양할 계획\*
    - \* 디지털 시대에 부합 않는 진입형태로서 '사업계획의 타당성'이 미흡할 가능성
- 4 신규 보험사 진입을 촉진하는 만큼, 보험회사 부실화시 신속·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\*도 병행 검토
  - \* 예: 보험계약이전 제도 개선, Run-off(보험계약 인수·인도) 전문 보험회사 도입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 허가정책 변경 (향후 보험업 허가시 반영) (교차모집) 보험업법(§85) 개정

#### 2.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활성화

☞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

#### 1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허용

- (현황)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업 가속화, 디지털기술 발달 등으로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 수요 증대
- 화상통화는 대면과 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 → 현행 채널별(대면 vs. 비대면) 규제체계\*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
  - \* (대면)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하여 중요사항 설명 (비대면(전화모집))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+ 음성녹취 및 보관 등 대면모집 보다 강화된 규제 적용
- (개선)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 이행시, 소비자와 대면 하여 모집\*한 것으로 인정(비대면 모집방식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)
  - \* 모집인과 고객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당사자간 시청각적인 의사소통 가능

- 다만,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\* 마련
  - \* 예: <sup>①</sup>보험사별 화상통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, 이를 이수한 설계사에 한해 허용 <sup>②</sup>설명시 소비자 제공화면(설명파일 등) 보관 <sup>③</sup>소비자 의사 확인 관련 로그기록 보관, 설명시 이석확인시스템 마련
- ※ (해외사례) 최근 일본·대만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화상통화 등 새로운 모집 수단을 허용하고 이를 규율하는 규제체계 마련 중
  - 기본적으로 '대면모집'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침 하에 규율
  -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(예: 대만·홍콩: 녹화 및 영상보관의무)
- ▶ [조치사항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(§22) 개정 및 협회 모범규준 마련

#### 2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허용

- (현황) 전화 모집시 모집인은 통화 전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하고,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청약절차 진행 필요
-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·이미지를 결합\*(보면서 듣는 형태)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'하이브리드 모집'을 활용하더라도, 음성녹음 등 전화모집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
  - \*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 +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'미러링 기술'을 활용하여 음성설명 제공
- (개선)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 기존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
-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\*를 갖춘 경우,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
  - \* 예: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(예: 계약자 답변·확인 로그기록) 보관
  - ※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 (※ 구체적 제외범위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)
- ▶ **[조치사항]** 보험업법 시행령(§43) 및 감독규정(§4-36) 개정

# 과제 2

#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

◇ 他업권 및 해외 금융회사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

#### 1.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

#### ① 보험상품과 연계한 사전관리형 물품·서비스 제공 허용

- (현황) 보험사들은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·서비스\*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나,
  - \* 예: 주택화재보험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, 자전거보험 충돌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, 반려동물보험 - 반려동물 구충제
-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(초년도 부가보험료의 10%와 3만원 중 적은금액만 가능)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
  - ※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접목된 건강증진형 상품(예: 스마트워치)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만원 한도 내 제공 가능
- (개선)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·서비스("사전관리형 상품")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 완화\*
  - \* 예: 현행 3만원 이내 → 20만원 이내로 확대
- 물품·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· 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적용
- 다만, 동 물품·서비스 제공이 **지나친 판촉경쟁**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 예정
- ※ (해외사례) 프랑스 AXA 보험사, 자사 어플리케이션(Mon AXA)을 특정 커넥티드 기기(센서·카메라 등 스마트홈 기기)와 연결하여 침입·화재 등 예방서비스 제공
- AXA는 전자기기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계약자의 기기 구입시 할인혜택 제공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 시행령(§46)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# 2 연금보험에 부합하는 상품규제 체계 마련

**구분** 목적 소비자

보호과제

- **(현황)**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의 일환으로서 규제
- 다만,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\*을 둔 저축성보험 규제는 그 인센티브 구조가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가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
  - \* 예: 납입완료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 (중도환급률 규제)
- ※ 펀드·신탁 등 他업권 취급 연금상품은 중도환급률 규제 등 未적용

(- ,	
저축성보험	연금보험
단기목적자금 마련	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재원 마련

연금유지 및 연금액 증가

< (참고)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간 차이 >

○ (개선) 보험계약자가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시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

초기 화급률/해지율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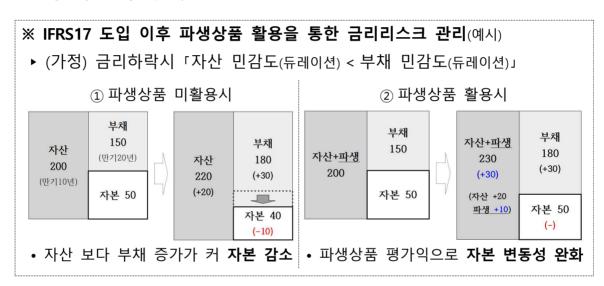
- 기존 상품(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품)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 제외\*
  - \*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도 [해지환급금 ≤ 납입원금]인 저해지형 상품구조 가능
- 다만, 소비자가 해지환급률,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 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\* 부과
  - \* 기존 상품(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여 설계)과 해지환급률, 연금액 등을 비교·설명
- ※ (해외사례) 日 톤틴형 연금보험, 중도해지시 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70%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・판매 중

#### ▶ [조치사항] 보험업감독규정(§7-60) 개정

#### 2.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

#### Ⅱ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폐지

- (현황)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%로 제한
- IFRS17 시행('23년~)시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들이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
- 이에 따라,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증대될 전망



- (개선)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
-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(K-ICS) 비율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\*
  - \* 新지급여력제도('23년 시행)下, 보험사가 일정비율 이상 파생거래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부과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효과
  - ※ 관련 「보험업법 개정안(이용우 의원안)」 旣발의
- ※ (해외사례) EU·일본의 경우, 파생상품 거래 관련 한도규제 없음
  - EU의 경우, '16년 건전성제도 강화(SolvencyⅡ) 이후 사전적 자산운용한도 폐지
- ▶ **[조치사항]** 보험업법(§106) 개정

#### 2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

- **(현황)** 채권발행 한도가 예외없이 자기자본의 100%로 제한
-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연성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
- ※ (**은행**) 차환발행시 旣발행분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한도의 **예외 인정**
- (개선) 차화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(상환예정)\*은 한도에서 非합산
  - \* 일정 조건 하(예: 1개월 내 상환)에서 차환발행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명백한 경우
  - ※ 한도적용 예시 ▶ (가정) 旣발행 6.000억 / 차환발행 7.000억 / 한도 10.000억원

	旣발행		차환발행		상환후
기 존	6,000 (既발행분)	<b>→</b>	7,000 (신규발행분) + 6,000 (旣발행분)	<b>→</b>	7,000 (신규발행분)
개 선	6,000 (旣발행분)	<b>→</b>	7,000 (신규발행분)	<b>→</b>	7,000 (신규발행분)
		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			

####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 시행령(§58) 개정

## ③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 개선

- **(현황)** 보험사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유동성자산 보유
  - ※ 유동성자산 = 현금성 자산, 상장 또는 협회등록 단기매매주식·매도가능주식,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, 단기매매채권
- **(개선)**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,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"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""을 추가
  - \* 예: 활성시장(예: 한국거래소 채권시장)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
  - ※ (은행)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산정시, 유동성자산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치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"**즉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**"으로 정의

#### ▶ [조치사항]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(별표13) 개정

# 과제 3

#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

◇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,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
#### 1. 감독행정 개선 : 경직적 제재의 합리화

☞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③ 감독·검사·제재 행정 개선

#### 1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

- **(현황)** 기초서류(사업방법서, 약관 등) 준수의무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,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\*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
  - \* 예: 보험계약 인수시 위험등급 등을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소 수령(할인)
- 과징금 규모도 단순히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, 실제 보험사 부당이득금 대비 과도·과소하게 산정되는 사례\*
  - \* 예: 보험금 未지급의 경우 과징금 과소산정(未지급 보험금(부당이득) > 수입보험료)
- (개선) 기초서류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·기준 정비
- (부과대상) 소비자 피해,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 제한\*
  - \* 예: ① 부당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
    - ② 부당하게 보험금(이자·해약환급금 포함)을 과소 지급하거나 미지급
    - ③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
- (부과기준)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금액(미지급 보험금·이자 등)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\*
  - \* (현행) 연간 수입보험료의 50% 이하
  - → (개선) 연간 수입보험료의 50% 이하[단, 보험금(이자, 해약환급금) 등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미지급 금액 이하]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(§129. §196) 및 시행령 개정

#### 2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

- (현황)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 →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주의・경고조치 불가
  - ※ 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주의·경고 조치 가능(法 §86)
- 가중제재 기준의 불명확성<sup>\*</sup>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사례도 존재
  - \* 업무정지·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가중제재의 기산점이 없어 아래 오래전 처분이 있는 경우도 등록취소 조치 불가피
- **(개선)**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
- 1)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징계(주의·경고) 근거 마련
- 2)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·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 될 시,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 합리화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 개정(§136)

####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

○ (현황) 위반행위의 상황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

#### <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>

- (책임준비금 과다적립)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·과다하게 쌓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(1억원 이하)
- → **과다적립은 보험사 건전성**이나 **소비자 피해** 우려가 **낮음**에도 **과태료 부과**
- ② (低실적·소형 GA의 공시의무 미이행) GA는 경영실적 등을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,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(1천만원 이하)
  - → 공시 未이행 GA의 대다수가 **규모가 매우 영세**하거나 **사실상 영업을 중단** 하여 과태료 납부능력을 상실

- (개선)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
- 1) 보험사 과실에 따른 "책임준비금 과다적립"은 과태료 면제
- 2) 저실적(반기실적 100만원 이하) 또는 소형 GA의 공시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차등화
  - \* 예: 중·대형 GA: 1천만원(현행 유지) / 소형 GA(설계사 100명 미만): 5백만원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(§209), 시행령(별표9) 및 감독규정(§4-12) 개정

#### 4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

○ (**현황**)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임에도,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사례

#### < 보험업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미비 사례 >

- ① (불공정 손해사정) 허위·부실·지연 손해사정, 특정 병원 소개 후 대가수수 등 손해사정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(法 §189) →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
- ② (무허가 자회사 업종추가) 보험회사는 사전승인(또는 신고)를 통해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나, 최초 승인 후 추가 승인 없이 업종을 추가·변경하는 사례 →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
- (개선) 보험업법령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,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
- 1) 허위·부실·지연 손해사정 등 보험업 법령상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(1천만원) 규정 신설
- 2) 보험회사 자회사가 **사전승인**(신고) **없이 업종을 추가·변경시 과태료**(5천만원) **부과근거** 마련\*
  - \* 사전승인(신고) 없이 자회사를 (최초)소유한 경우는 현재도 과태료 부과 가능(5천만원)

####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(§209) 개정

#### 2. 민간 주도의 인프라 기능 제고

#### ①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업무분담 추진

- (현황) 보험민원은 '20년 전체 금융민원의 59%(총 53,278건)를 차지
   →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한계\*
  - \* 민원 처리기간 현황 : ('17) 16.5일 → ('20년) 29일(+12.5일)
- (개선)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
   있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해소 추진

#### <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유형(안) >

구 분	세부 유형
① 단순불만	•단순질의, 보험사 업무처리 단순실수, 직원 불친절 등 소비자에 대한 굿리스너 역할이 중요한 민원
②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	•보험료 할증·할인 관련, 보험가입 승낙 또는 인수 거절 관련 정보 질의·문의 등 협회의 상세한 안내 및 대안제시가 가능한 민원
③ 현재도 보험사등에 이첩 처리하는 민원사항	•모집인-보험회사·대리점간의 고용·계약관계상 발생 민원, 보험사간 자율협정 준수사항 관련 민원 등

- 보험회사·소비자간 권리·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\*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
  - \* 예: 상품설명 불충분,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, 보험금 지급 지연
- 협회가 대형사 등 회원사 영향을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공정성·중립성 확보절차 마련

#### <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·중립성 확보방안(예시) >

- ① (외부 전문가그룹 운영) 외부전문가 포함 「민원심의위원회」 구성 → 민원처리 센터 운영규정 및 민원처리매뉴얼 제·개정 등 심의·의결
- ② (민원센터 독립성) 민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, 업계간섭 배제방안 마련
- ③ (결과보고) 민원처리 결과를 금감원에 주기적(예: 분기) 보고

- ※ (他업권사례) 금투, 여신협회는 관련 법령에 민원·분쟁처리 근거가 존재하여 민원·분쟁처리 업무 수행중
- ※ (해외사례) 일본·독일의 경우 협회 등 민간조정기구가 직접 민원처리 가능
  - 日: 협회 산하 지정분쟁해결기관(생명보험상담소, 손해보험ADR 센터)에서 처리
  - 獨: 협회 설립 옴부즈만에서 민원처리

(단, 영국·캐나다·호주 등에서는 공적 민간기구에서 민원 전담)

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(§175) 및 시행령 개정

#### 2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대응업무 근거 마련

- (**현황**)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나, 법령상 한정된 업무범위<sup>\*</sup>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한계
  - \* 보험업법령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<sup>1)</sup>보험회사간 업무질서 유지, <sup>2)</sup>보험상품 비교· 공시, <sup>3)</sup>통계수집 및 <sup>4)</sup>위탁업무 등을 규정
  - 이외 업계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, 포상금 지급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
- (개선)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대응 업무(예: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, 보험사기 예방·홍보)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 시행령(§84) 개정

#### ③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

- 자율규제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
   금감원 → 보험계리사회로 이관
- ※ 他전문자격 사례(공인회계사 등록 : 공인회계사회, 세무사 등록: 한국세무사회)와 동일
- ▶ [조치사항] 보험업법 시행령(§6) 개정

# ∨. 향후 추진계획

# 1. 후속조치 이행계획

- □ **허가정책 변경**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, 법령 개정,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
  - 법률 개정과제는 4분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·통과 추진
  - 시행령 등 **하위법령 개정**은 '23.1분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

#### <세부 추진 일정 >

세부 과제	필요조치	시기
[과제 1] 디지털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산업-	구조 개선	
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		
- 상품특화 보험사 진입 허용 등 -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	허가정책 변경 보험업법 개정	즉시 '22.11월~
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활성화		
-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허용 -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허용	모범규준 마련 시행령 개정	′23.1분기
[과제 2] 보험회사 경영자율성 제고		
● 상품개발 규제 완화		
- 사전관리형 물품·서비스 제공 허용 - 연금보험 상품규제 완화	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	′23.1분기
자산운용 규제 완화		
- 파생거래 한도규제 폐지 -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-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 개선	보험업법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세칙 개정	'22.11월~ '23.1분기 '22.11월
[과제 3]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	Н	
감독행정 개선		
-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-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-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기준 완화 -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제재	보험업법 개정	'22.11월~
<b>②</b> 민간주도의 인프라 기능 제고		
- 협회 일반민원 업무분담 추진 - 협회 보험사기 대응업무 근거 마련 -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	보험업법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	'22.11월~ '23.1분기

## 2. 추가 건의과제 검토계획

- □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**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49건**\*도 **추가검토 진행** 
  - \* 기수용 과제(2건) 및 제2차 금융규제혁신 회의(8.23일) 旣발표 과제(10건) 제외
  - ① 금산분리(자회사 업종 확대),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'23년 초 발표
  - ※ **금산분리** 관련, **보험업권**은 **<u>자회사 업종제한 폐지 또는 완화</u>(예: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 등)를 요청**
  - 디지털분야·비금융생활서비스 등 혁신서비스가 촉진되도록 자회사 규제를
    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, 해외사례·각계 의견등을 종합하여 방안 구체화
    - (1안)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회사영위 업종 추가 (Positive list 확대)
    - (2안) Negative 방식으로 규제 전환 + 단, 위험총량 내에서 업무 영위
  - ②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「GA 판매책임 강화방안」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'23년 상반기 중 추가 발표
  - ③ 보험계약 재매입 등 제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금감원, 업계 등과 TF를 구성(4분기)하여 소비자 보호장치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
  - ※ <u>계약재매입(Buy-back)</u>: 과거 판매한 **고금리 보험계약**의 **역마진 해소**를 위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**프리미엄을 제공**하고 **보험계약을 종료** 
    - (순기능) 보험사: 고금리상품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해소 → 재무적 리스크 완화 소비자: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수령
    - (**부작용**) 소비자의 자의가 아닌데도 **보험사·설계사의 유도**로 인해 향후 보장 소멸 및 연금보험의 세금환급 등 **불이익에 대한 이해없이 보험계약 해지**

# 참고 1

# 규제혁신 과제 관련 해외사례

그ㅂᄼ	#II OLU TI
구분(현행 규제)	해외사례
	① 진입규제·모집규제 관련
1사 1라이선스 (명시적 규제는 없으나, 허가정책으로 운용)	▶( <b>미국·일본·EU</b> ) 명시적 규제 없음 - 단, 보험업 허가는 감독당국의 재량사항
<b>화상통화 등 디지털</b> <b>기술을 활용한 모집규제</b> (현재 비대면 모집과	▶최근 일본·홍콩·대만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화상 통화 등 새로운 모집수단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중  - (일본) 비대면·비접촉 방식의 보험모집 유형에 '화상회의' 시스템을 포함하고, 대면모집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침 발표('21.1월) / 녹화·녹취 등 의무는 없음
동일하게 녹화·녹취의무 등 적용)	- (홍콩) Sandbox를 통해 화상통화 모집 등 허용 / 녹화· 녹취 의무가 적용되나, 소비자 동의시 녹화·녹취 미적용 가능(Opt-out). 각 화상모집 과정에서의 접속기록 보관 - (대만) 「보험 화상모집 운영 가이드라인」 발표('21.11월) / 본인인증, 녹화영상 보관 등 소비자 보호 장치 요구
2	상품개발·자산운용 규제 관련
사전관리형 물품·서비스 제공 제한	<ul> <li>▶(미국(뉴욕州), 일본)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 금액(美: \$25, 日: 명시적 금액 x) 이상의 가치 제공 금지</li> <li>단, 사전관리형 물품·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유인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(예: (美 Hippo) 연기·누수·침입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센서를 보험가입시 제공)</li> </ul>
(특별이익으로 보아 3만원 이내만 허용)	▶( <b>EU</b> ) 다양한 사전관리형 물품·서비스 제공 중
	- (프랑스 AXA) 자사 어플리케이션(Mon AXA)를 특정 커넥 티드 기기(스마트홈 기기)와 연결하여 침입·화재 등 예방 서비스 제공→ 계약자의 커넥티드 기기 구입시 할인혜택
	- ( <b>벨기에 AG Insurance</b> ) 자사 화재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주택 보수 및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

#### 연금보험 상품규제

(중도환급률 규제 적용)

- ▶(미국) 중도환급률 규제 등 사업비 한도를 직접 규제 하는 규정 없음
- ▶(**일본**) 중도환급률 규제 등 명시적 규제 없음
- 예: 톤틴형 연금보험(해약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70%로 낮추고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구조) 설계·판매중

#### 파생상품 거래한도

(총자산의 6%, 사전적 한도규제)

- ▶(미국(뉴욕州)) 원칙적으로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만 허용
- 매입시는 총자산의 7.5% 이내, 매도시는 총자산의 3.0% 이내로 제한
- ▶(EU·일본) 사전적 한도규제 없음 → 사후적 건전성 규제에서 자산운용 집중리스크 측정을 통해 규율

#### ③ 감독행정 및 민간인프라 관련

####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

(소비자 피해 등과 무관하게 기초서류 위반시 일률적 제재)

- ▶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포괄적 규정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하는 사례 無
- (**미국**) Unfair Trade Practices(UTP) 및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(UCSP)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공정· 사기적 행위에 대해 제재하도록 규정
- (**EU**)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의무조항 無. 단, 영국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·공정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의 경우 금전제재 가능

#### 보험협회의 업무범위

(일반민원 처리 등 업무수행 불가)

- ▶(**일본**) 협회 산하의 지정분쟁해결기관(생명보험상담소, 손해보험ADR센터)에서 민원처리 가능
- ▶(**독일**) 협회설립 옴부즈만에서 민원기능 담당
- ▶(영국·캐나다·호주) 독립성이 보장된 공적민간기구 (음부즈만)에서 민원 전담처리

# 참고 2

# 보험 관련 금융권협회 주요 건의사항 (77건)

#### <금융산업 규제 완화, 58개>

협회	내 용	비고			
	① 진입규제 완화(4개)				
생·손보협	■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(3건)	디지털			
0.57.8	■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요건 완화	전환			
	② 업무범위 개선(15개)				
	① 겸영업무 확대(9개)				
은행연	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				
손보협	■보험회사의 전자금융업무 허용 범위 확대				
	■비카드여전사(또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여전사)에 보험대리점	디지터			
여신협	업무 허용(2건)	디지털   전환			
	■카드사의 보험모집 판매비중 규제 완화	건된 			
-1.1.41	■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개선(금융상품직접추천 허용,				
핀산협	경업GA허용 등 4건)				
	② 출자제한 완화(4개)				
	■ 보험회사 자회사 규제 완화				
생보협	■ 보험사 사회사 II세 전화 ■ 보험사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	디지터			
		│ 디지털 │ 전환			
손보협	■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영위를 위한 자회사 규제 완화				
	■ 신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				
	③ 업무위탁 개선(2개)				
생·손보협	■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(2건)	│디지털 │ 전환			
	③ 지배구조 개선(1개)				
	디즈즈이의 기계계실 그게 이실	감독			
생보협	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 완화	행정			
	④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(14개)				
	① 자산운용 규제 완화(4개)				
	■자산운용 한도규제 개선				
생보협	■금리리스크 헤지 수단 마련				
	■ 변액보증위험 헤지목적 파생상품 규제 재검토	기타			
손보협	■자산운용 비율 한도 규제 폐지				

	②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 및 자본규제 등 완화(10개)	
생보협	■계약재매입(buy-back) 도입 ■IFRS17 도입 대비(위험혜지목적 파생상품거래 한도 예외, 자산이익률 및 공시이율 산출 관련 규제 완화, RP매도 요건 명확화, ALM목적 파생거래시 위험경감기법 인정여부 명확화, 계약자배당 손익재원 계산 관련 제도개선 6건) ■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 개선 ■ 해외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 완화	기타
손보협	■자금조달 규제 완화	
	5 영업행위 규제 완화(20개)	I
	① 정보공유 완화(1개)	
손보협	■해외 보험사로의 정보이전 관련 규제 완화	디지털 전환
	② 금융상품 판매·모집 관련(9개)	
	· 판매·모집 채널 다양화(6개)	
생보협	■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허용 ■화상통화를 통한 고객 설명의무 허용 ■융·복합 판매채널 도입	디지털
핀산협	■전자금융업자의 보험모집 규제 제한 검토 ■전자금융업자의 보험모집 가능상품 제한 검토 ■비대면 보장성 상품판매 방식 확대	전환
	· 판매·모집 규제 완화(3개)	
생보협	■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교차모집 제도 완화	디지털
핀산협	■마이데이터 보험상품 비교추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중개행위에서 제외(2건)	전환
	③ 기타(10개)	
	· 특별이익 제공 금지 완화(3개)	
생보협 	■ 온라인채널의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제 완화 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 완화 ■ 인슈어테크 영업규제 완화	디지털 전환
	· 금융상품 관련 규제 완화(6개)	
생보협	■포인트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허용 ■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운영 규제 완화 ■특별계정의 자회사 출자제한 규제 완화 ■펀드변경 관련 특별계정 차입 규제 완화 ■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일반계정 운영 허용 ■연금보험상품설계기준 재검토	디지털 전환

· 기타(1개)			
핀산협	■ 보험대리점의 보험료 대행 수납 허용	디지털 전환	
⑤ 감독·검사·제재 감독관행 개선(2개)			
생보협	■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■독립손해사정사 불법행위 규율	감독 행정	
	기 기타 규제완화(2개)		
생보협	■보험회사 요양서비스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	디지털 전환	
	■표준약관상 임의해지권 적용 대상 합리화	기타	

# <금융산업 인프라, 제도 지원, 19개>

협회	내 용	비고		
① 금융산업 시장질서 확립(14개)				
생보협	■ 설계사의 교차모집 등록사실 통보/조회 ■ 설계사의 교차모집 계약내용 공유/제공 ■ GA모집질서 건전화(GA모집업무 건전성 평가제도 도입, GA 모집건전성 기반수수료 지급체계 개선, 대형GA에 1차 배상책임 부가, GA 영업보증금 현실화, GA임원의 자격기준 강화, GA 판매책임 강화를 통한 시장모집질서 확립 등 6건) ■ 평균공시이율 제도 개선, 평균공시이율 제도 운영 보완(2건) ■ 보험협회 일반민원 처리 허용, 보험사기조사 지원업무 근거 마련(2건)	감독 행정		
손보협	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설계사 관리 강화 ■보험설계사의 교육 의무 마련			
2 빅테크0	네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 마련(4개)			
생보협	■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장치 및 플랫폼 내 독과점 방지 규제 마련(2건)	혁신		
손보협	■ 빅테크 진입 시 시장참여자간 균형적 이익구조 정립방안 마련 ■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입규제 마련	인프라		
③ 기타(1개)				
핀산협	■온투업자 보증보험 대출 적용 완화	자본 시장		